



젊음에 희망을! 지역에 활기를!

청주산남 2-1 증축 행복주택

청주산남2-1지구 장기공공임대 증축(주거복지동)

대학생, 청년 등을 위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CHEONGJU SANNAM2-1
증축 행복주택 66세대

19형 > 66세대

입주자모집공고 12월 26일(수)

접수일정 1월 4일(금)~1월 10일(목)

튼튼한 국민생활 파트너
with LH



UNIT PLAN

UNIT PLAN

19형

[66세대]



PLAN MAPS

동·호배치도

모두가 희망을 키우는 공간
다양한 편의시설로 생활을 더욱 행복하게!

15F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4F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3F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2F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11F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0F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9F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8F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7F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6F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5F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4F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3F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2F	사회복지시설(교회)									
1F	상가·관리동·노인정·주민공동시설									
B1	기계실					상가				
	26형 [영구임대주택 52세대]					19형 [행복주택 66세대]				
	19형 [영구임대주택 12세대]									

단위세대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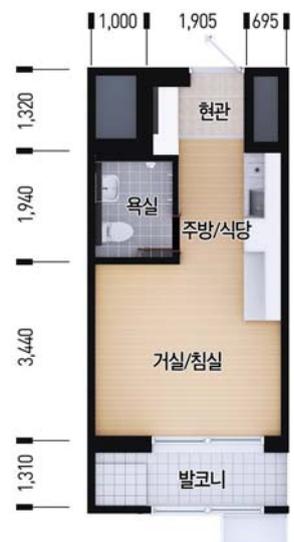
주거전용면적	19.98㎡
주거공용면적	7.9852㎡
기타공용면적	4.3770㎡
주차장면적	0.6825㎡

실별면적

계	19.98㎡
거실/침실	11.12㎡
주방/식당	3.60㎡
욕실	2.84㎡
현관	2.32㎡
발코니 초과분	0.10㎡

서비스면적

발코니1	5.40㎡
------	-------



※ 상가 단지조감도 및 단지배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각 시설 및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 0.3025 = 평
 ※ 세대평면도 및 세대아이쇼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가 동호배치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관련 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벽체두께는 구조설계상 동 및 층높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주산남2-1 증축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8. 12. 26]

1. 건설위치 :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290 영구임대 단지 내 행복주택 66호

- 청주산남2-1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2.26)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 복학 예정인 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
 -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 예술인
 - ③ **고령자** :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자
 - ④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므로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오시면 현장(LH 충북지역본부 5층)에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2.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태	공급 대상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기간(년)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월 임대료(천원)	계	계약금		잔금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천원)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19	대학생 계층	13	27	19.98	7.9852	4.3770	0.6825	33.0247	9,790	1,958	7,832	59	(+)0	9,790	59,000	6	'20.02
	청년계층	13							(-)7,000	2,790	82,330						
	고령자(주거약자용외)	3	(+)0						10,360	62,000							
			(-)8,000						2,360	88,660							
			(+)1,000						11,940	61,000							
주거급여 수급자	4	3	(-)8,000	2,940	92,660												
			(+)0	8,640	52,000												
								(-)6,000	2,640	72,000	20						

- 본 주택은 청주산남2-1 기존 영구임대 단지 내 건설되는 행복주택(66호), 영구임대(64호)의 혼합형 주택(206동)입니다.
- 19형의 행복주택에는 가스쿠팡, 냉장고, 냉장고 장, 책상 및 책꽂이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분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분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최종 당첨자의 최초 계약체결 이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반공급분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며, 계약체결시점 및 방법은 별도 안내합니다.
 - 대학생, 청년계층의 남은주택은 주거약자용 외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과 고령자계층의 남은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대학생, 청년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 남은주택은 주거약자용 외 고령자 → 대학생, 청년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연차기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등 · 호변경 불가를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휴먼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기가 발생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 '고등학교'는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 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 · 고등기술학교와 동 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 있는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단,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에게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자모집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 또는 연접지역(충북 진천, 보은, 증평, 괴산)에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충청 북도)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제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 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2.26)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지역요건을 갖춘 자.
 -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 공급신청자로 전환함.

● 지역요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청주시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	---

● 배점

항목	3점	1점
거주	대학생	부모 모두 청주시 및 연접지역(충북 진천, 보은, 증평, 괴산)에 거주
	취업준비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청주시의 연접 지역(충북 진천, 보은, 증평, 괴산)에 거주(단, 부모 모두 청주시외에 거주해야 함)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청주시에 3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청주시에 3년 미만 거주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분량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분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2. 청년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2.26)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②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④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 단, 대학생, 청년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 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재청각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합사유에 대한 소명여부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3-1.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2.26)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대학생은 ①~②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④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 ①~②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것
- ①~④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것
- ② 중년 혼인 아님 것
-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것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3인 이하	5,002,590원 이하
4인, 5인	5,846,903원 이하
6인	6,220,005원 이하

-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05,806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1대 이상 소유하지 않은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①-②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지출생일 1978.12.27~1999.12.26**
 - ②-③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포함하여 선정함.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해당세대	본인
세대원 있는 세대주	3인 이하	5,002,590원 이하	4,002,072원 이하
	4인, 5인	5,846,903원 이하	4,677,522원 이하
	6인	6,220,005원 이하	4,976,004원 이하
그 외	-	-	4,002,072원 이하

- ※ '무주택'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소득'은 「소득세법, 제9조제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서 및 건강보험자격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연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 ①-②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외 무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간,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업체,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②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①-③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하며, 예술인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함.
-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단,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자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 처리됨.

● 순위

1 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 또는 연접지역(충북 진천, 보은, 증평, 괴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 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충청북도)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 순위	제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지등등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지등등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명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을)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2.26)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지역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지역요건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지등등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지등등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명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을)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청주시에 3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청주시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액을 2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액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복 청약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람.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추천
일반공급	순위 → 추천 ※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천함.

※ 동일 배점 경쟁시 추천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3. 고령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2.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주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②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3인 이하	5,002,590원 이하
4인, 5인	5,846,903원 이하
6인	6,220,005원 이하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고령자'의 해당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함. ※ '무주택기간'은 해당세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2.26)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지역요건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75세 이상	만 70세 이상~만 75세 미만	만 70세 미만~만 65세 이상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청주시에 5년 이상 거주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청주시에 5년 미만 거주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호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4급자, 고령제후유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청주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천
일반공급	추천

※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천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4.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2.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자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②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기간'은 해당세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함.
 -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함.
 -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2.26)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지역요건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청주시에 5년 이상 거주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청주시에 5년 미만 거주
② 국가유공자·보호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무우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청주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천
일반공급	추천

※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천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공급대상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대학생계층	인터넷(PC 모바일)접수 *19.1.4.(금) 10:00 ~*19.1.10.(목) 16:00 *인터넷(PC 모바일) 청약인쇄 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정발과 마감일 제외)	*19.1.17.(목) 16:00 이후(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현장접수 *19.1.24.(목) ~*19.1.25.(금) 10:00~16:00 *현장접수점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림로 2060 LH 충북지역본부 5층	*19.4.4.(목) 16: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ARS(1661-7700)	온라인계약 *19.4.16.(화) 10:00 ~*19.4.18.(목) 16:00 현장계약 *19.4.16.(화) ~*19.4.18.(목) 10:00~16:00 *현장계약점소 청주시산2-1 관리사무소
청년계층	*인터넷(PC 모바일) 청약인쇄 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정발과 마감일 제외)	*19.1.10.(목) 16:00 ~*19.1.11.(금) 16:00 *현장접수점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림로 2060 LH 충북지역본부 5층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 게시	
고령자	현장접수 *19.1.10.(목)10:00~16:00 *현장접수점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림로 2060 LH 충북지역본부 5층				
주거급여수급자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에 한하여 현장(LH 충북지역본부 5층)에서 정해진 일자에만 *19.1.10.(목)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만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 해당세대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한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함.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와 부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의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의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안내 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외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 및 현장 청약 방법

○ 인터넷(PC) 신청자

-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공인인증서 : 5대 인종기(금융결제원, 증권전선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우정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가능)
- **현장 신청자(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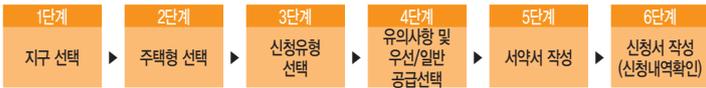
-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 공인인증서 : 5대 인종기(금융결제원, 증권전선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우정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가능)
- * 모바일 앱 사용 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 설치할 수 없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 청약 연동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19.01.17(목)16:00 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현장접수 장소를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됩니다.
- **현장 신청자** : 접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찰사항에 대해서는 급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모바일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19.01.04.(금) 10:00부터 '19.01.10.(목) 16: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자정기종)하여야 하며, 접수자 등 주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일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19.01.04.(금) 10:00부터 '19.01.10.(목) 16: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자정기종)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C에서 수정 취소 가능)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18.12.26)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동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고	부수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만14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전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접수가 거부됨	1통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점점) 제공 동의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대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대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발급 (아래 해당지안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초본(단,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 우선공급신청 시 거주 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초본 각 1통 (단, 부모 사망시 제출 불요)	1통

제출서류	비고	부수
가족관계증명서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 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사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지안 제출) · 태아를 가수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태아포함 3인 이하 가구는 소득기준이 동일하므로 제출 안해도 무방)	1통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체류허가신청 확인서 사본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이 안된 경우 제출) ·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본인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입국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사본	1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서류 - 본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외의 관계인증서(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 : (인간개발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장양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본), 본인 인감도장(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생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자(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해당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해당지안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동일한 거주지 확인) 	해당 학교 주민센터 주민센터
청년 계층 (만19 이상~ 만59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 주급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할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지안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등 ·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 이상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없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년 서류로 제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 사본 제출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공급신청 시 장애인 등 배정(3)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호대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전 등록자, 보호대상대상자 확인원(12.7.1 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재장애등급 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령재추우의증명자 중 장애등급에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령재추우 대상 확인원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주거급여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 우선공급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 배정(2)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보호대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보호대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 확인원(12.7.전 등록자, 보호대상대상자 확인원(12.7.1 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가 출신이나 인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인양친계증명서) 	병역이행 임대신청서 주민센터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등·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태에 따라 동별, 층별, 합병 구분없이 추정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할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 계약안내

- **온라인 계약** [기간 : '19.04.16(화) 10:00~'19.04.18(목) 16: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산가제 및 온라인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신청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계약체결 절차]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됨.
- * "우리카사"의 입금확인, 온·오프라인 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카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 "온라인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카사의 입금확인 후 온라인계약 기간 내 내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하여야 함.
- **현장 계약 [현장계약주소 : 청주산남2-1 관리사무소]**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일자에 ['19.04.16(화)~'19.04.18(목) 10:00~16:00]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대리 계약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입증 또는 임입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본인인 계약시에는 서명 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신분 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원조방식 홀로그래피와 유효기간 내) 내세우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대장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서서(공사장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증명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장장서),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권),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인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7. 무주택·소득·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질공공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권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우점권(이하 '분양권 등',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성립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한 날
 - **분양권 등의 경우**
 1.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 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자녀/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교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다.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지게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속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사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재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의 '건축법(법률 제76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에 해당한다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⑧ 소영방범 : 해당 주택이 '건축법(법률 제76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 문을 해당 지자체(시·군·구) 차차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⑨ **신축소의 방범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⑩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영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소영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이성년 자는 공금산정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근로소득(상근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지출근로소득, 공공임대근로소득) ·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공적이자소득)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토지·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9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농업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증소수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인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 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충용 차량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환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장기예금, 정기저축,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권, 출자지분, 부동산(연관신차: 최종 시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4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법' 제40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항공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 상가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0조제1호에 따른 임차: '지방세법'시행령, 제42조제4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0조제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시행령, 제42조제4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0조제4호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시행령, 제42조제4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별 기준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권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액(이하 '기준분할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분할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회계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공공기관 대출금 · 일반에 공개된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 판결문, 조정서, 화해안, 확정판결문,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인 변형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 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충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 · 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 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액(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립사업자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고용 부합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거나 · 건설공사사용자제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하역인)인용 종사자(정수 근로를 제외한)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 · 신채보합 근로내역 확인신고서
	지출근로 소득	지출근로, 지출공공근로, 지출공공제시업, 전문건설, 직업훈련 등 지출근로의 일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입	· '지출근로자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농업임대사업, 장애인(장애인)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임대' 근로내역
	임업소득	경승업(耕稼業), 과수 · 원예업, 양양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족의 시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연부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연부소득
	어업소득	영양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양식수산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부동산 · 동산 · 권리 기타 재산의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종합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예금 주식 · 채권의 이자와 배당 등에 합하여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일반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거래법' 제10조제4호~3호: '지정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위에 사용되고 있는 사설상의 토지 · 건물(건축물 제2조제4항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사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업장 · 정류 · 차고 · 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2조제4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놀이기구 시설, 도박시설, 급 · 배수시설, 연차 지공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사설물 포함한다) · 주택(민간 주택)의 구성원이 장기인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자재를 포함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된 본토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정하는 제외)	· 지방세청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2조제4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통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청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한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차적조사 등록
기타자산	선박 · 항공기	· 선박: 기선 · 편선 등 영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 비행선 · 활공기 · 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청 자료'
	입목자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축목 등 입목(木)자산	· '지방세청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영양회원권, 승마회원권, 오토회원권)	· '지방세청 자료'
금융자산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청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상 규정된 면허(면허)에 대한 권리	· '지방세청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차적조사
부채	연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통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일반에 공개된 대출금 · 법원에 공개된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 확정된 사례 ·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통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청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정악관 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입주자격</th> <th>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대학생, 청년 계층</td> <td>6년</td> </tr> <tr> <td>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td> <td>무주택(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 </tr> <tr> <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 <td>20년</td> </tr> <tr> <td>신입대입근로자</td> <td>6년(단 예비임주자, 신규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td> </tr> </tbody> </table>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무주택(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신입대입근로자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무주택(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신입대입근로자	6년(단 예비임주자, 신규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재정악관 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됨 · 호변정 불가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재정악관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이 출신이나 임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병역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 또는 연접지역(충북 진천, 보은, 증평, 괴산) 내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계층은 편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 변경된 경우 ○ 청년 계층 및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의 소득, 자산, 부채 등 근거가 변경된 경우 ○ 공공주택임대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사가 발생하면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 가능함. 									
갱신계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여야 합니다. 갱신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함.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소득이 없는 입양에 중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출생, 이혼, 조양, 양친상대의 혼인(합산)기간 1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사가 발생하면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 가능함. 									

관련항목	유의사항										
갱신 계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대상자별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활동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급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2항에 따른 월거인 등 기준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활동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활동비율</th> </tr> <tr> <th>소득기준 초과 비율</th> <th>최초 갱신계약 시</th> </tr> </thead> <tbody> <tr> <td>10% 이하</td> <td>110%</td> </tr> <tr> <td>10% 초과 30% 이하</td> <td>120%</td> </tr> <tr> <td>30% 초과</td> <td>14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소득세별 제9조제4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거주'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활동비율		소득기준 초과 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10% 이하	110%	10% 초과 30% 이하	120%	30% 초과	140%
활동비율											
소득기준 초과 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10% 이하	110%										
10% 초과 30% 이하	120%										
30% 초과	140%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거주 및 청년 거주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식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중복 입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는 이 주택을 무리공신에 영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표일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도 보지 않으나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영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모기 계약에서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제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진상사료 등에 의해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 이후 연혁채주소, 전화변화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증금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정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이는 정확인가(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등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해택 발생 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입니다.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이 3급 이상 지적장애(인)노병병역(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받게 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테러를 기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임양자를 기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신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인사, 불법임대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전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고,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전금결제요를 부과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날짜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차인인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기금 취급은행(우원뱅크,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한도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중, 인터미터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차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생활문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월빙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월빙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 및 단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주택은 청주산남2-1 기종단지 내 행복주택(66호), 영유민대(64호)의 혼합형 주택입니다. • 사업자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조건 과정 중에 변경,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별도 안내합니다. • 본 지역의 서쪽에는 어린이 놀이대, 동쪽에는 사회복합시설이 인접해 있습니다. • 본 지역의 남쪽은 단지 지하주차장이 인접해 있습니다. • 단지 북쪽으로 20m 도로가 인접하여 차량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단지 주변도로의 통과 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단지 차량 주차인사 경도등 알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변 건물 및 시설 당 아파트 배기구 등 도는 등, 후술부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영향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인근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취사용 연료는 도시가스입니다. • 아파트 외부디자인 벽체문양 및 자재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외의 특성상 단지내외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쪽에는 한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 각종광공,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위치도, 조경도, 투시도, 배수도,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단지 최초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사업계획내용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주변 건물 및 도로 여건과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세대에 대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중공시 확정측량에 의해 대지면적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인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경계의 담장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차장 시설, 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구), 환외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취향, 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실 내지 축방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 허가/변경, 사업조건 변경 및 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조건의 단면에서 단면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등, 호수부 위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축방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기 위치가 경이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중,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단지의 구조 공구 및 성능부문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것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 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부부의 시설물(공동계단,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가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현장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출입은 불가합니다. • 추후 중도에 단지 전기인입용 현전시설물(PAD S/W)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이 진입하여 주차할 수 있습니다.(사다리차 이용불가시 엘리베이터 이용) • 전기실 인접 등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기능 및 주전기 등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계단실은 화절기에 결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공인입 변경으로 인하여 옥탑, 지층, 축방, 인면전환면 천창과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복도 나열방의 길이 및 높이 등)은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 동의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이 진입하여 주차할 수 있습니다. (사다리차 이용불가시 엘리베이터 이용) •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 설치되어 정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매월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구 및 단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 공고시 일면은 조경도와 둘레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은 일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식재규격, 수종, 위치 등 및 시설물(채로, 형태, 위치 등) 시공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관은 여건에 따라 외부수성페인트로 색상을 달리하여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동 지하에 전기, 배기설비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총 335대(기종 단지 269대, 중층 단지 66대)시점 28대, 지하 38대로 되어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른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2.1m입니다. • 주차주차장 사용에 대하여 현장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호별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제 및 발코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의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방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자체 중 색안티세의 부도 및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임대공공시 마감재 수준을 정밀 확인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 내역은 타인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릿, 현장사무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한 선로통 및 드레인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나 유의하시고, 신청 및 입주 시 팜플릿, 현장사무소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우, 오수, 전기분전반 열배배기 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안내책자팜플릿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확인서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 분양안내책자팜플릿에 포함된 각 주택형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릿 제작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목치수가 아닌 벽체 중심선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로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성상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입물(분양안내책자, 공급단지 등)의 컴퓨터 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시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발구조 변경신청의 확정 등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방배설은 각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필요한 추가시설은 설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생활환경 변화(안락상승, 사용, 빨래건조, 가습기) 등, 단열성, 창호기밀성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는 결로 또는 결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하여야 합니다. • 최상층은 평지붕이며 코르도트 난간 및 안전 난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문 및 시트마감 부위는 사용상 불가피하게 타카 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공동부위 마감재의 색상, 색상 및 디자인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살미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전선, 배수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욕실은 외부방수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세대 발코니 내 경량벽(칸막이)은 화재 시 열에너지를 차단할 수 있는 공강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층층 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동 현관 및 동 현관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출에는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자재는 중소기업제품으로 설치됩니다.

9. 시행사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등록번호)	시공업체	
청주산남2-1 주거복지동 준공공사 1구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301-82-17619)	건축	이화공영(주) (주)삼양건설
		기계	
		토목	
		소방	이화공영(주)
		조경	이화공영(주) / (주)삼양건설
	전기	㈜영웅전기	
	통신	㈜니트시스템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아래표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추후 신청시 현장여건에 따라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구분	항목	신청대상
현관	현관마루구들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마루구들 턱을 경사형으로 설치
욕실 (1개소 한함)	단차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구역확대 및 개폐방법 변경	출입구 폭 80센티미터 이상 확대 / 개폐방법 변경(여닫이-미닫이)
	좌식 샤워시설	좌식 샤워시설 설치 및 안전손잡이 설치
	좌편의 안전손잡이	좌편의 벽면에 안전손잡이
주방 가구	수건걸이 높이 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 가능한 높이(1.0~1.2미터)
	높이가 조절 세면기	높이가 조절이 가능한 세면기 설치
거실	좌식 식卓대	휠체어 및 의자 사용이 가능한 좌식 식卓대 설치
	가스밸브 높이 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미터 내외)
기타	비디오존 높이 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미터 내외)
	시각정보기	청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내 1개소 설치
	이간전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음성응답시스템	관리소 -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 **상이 3급 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 이상 5,618인주화동분부상자, 고도장애 고연체후유증환자를 말함니다.

■ 유의사항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신청서, 신분,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618인주유공자 확인원, 고연체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 준공 6개월 전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공중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보증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마감제 시설내역

현관	현관 도어 신발장 현관 바닥 현관 등	레버형 도어락 HPM 자기질타일 EL20W. 센서	방화문용 가구전용 400×400	침실	침실 바닥재 침실 벽지 침실 문 침실 창	러그넷 실크도베지 합성수지(ABS) 합성수지미서기(DP)	(2.0T이상) 데코시트마감 일면래핑
거실	비디오 폰 거실바닥재 거실 등 거실 벽지	7inch 칼라 LCD 러그넷 FPL36W×3/LED40W 실크도베지	2.0T이상	욕실	욕조 세면기 양변기 욕조수전 샤워수전 세면기수전 욕실타일	- 벽걸이형 투피스형 - 높이조절형 원래버.원홀형 벽도기질/바닥자기질	없음 백색 없음 안마헤드 니켈크롬도금 400*250/200*200
주방	싱크대 개수대 레인지후드 주방싱크수전 주방바닥재 주방타일	HPM 스테인레스 디럭스형 원래버.원홀형 러그넷 자기질타일	가구전용 싱크볼 절수형 2.0T이상 400×250	발코니	발코니 샷시 세탁기수전 화초물주기수전	합성수지미서기(BP) 심자형핸들 심자형핸들	물뿌리기형
				기타/정보통신	위성TV수신시스템 CCTV시스템	디지털TV방송 200만화소 IP방송	

*상기 마감재는 자재의 품질 · 기타사유 등으로 시공여건상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시공 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현장)

LH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0, 5층



계약체결 (현장)

산남주공 2단지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90



임대문의

- 콜센터: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LH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 043-290-3299
- 인터넷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당첨자ARS • 1661-7700



<https://apply.lh.or.kr>

팸플렛 배부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